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대한 표시사항 신설 등〉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79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에 대한 표시 및 제재체계 마련	4
2. 불법 계량기 유통 방지를 위한 조사·감시체계 강화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26.
3. 회부연월일 : 2026. 3.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상거래나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차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의 양도, 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음.

기업 현장 규제 불편 해소 방안(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일환으로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 확대(1kg → 3kg)를 결정함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저울이 상거래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 형식승인 저울에 대한 표시 의무화, 불법 계량기 조사 대상의 확대 및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해야 하고, 표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표시 사항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표시 사항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개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의2 신설).
- 나. 소속 공무원은 불법 계량기의 유통 방지 등을 위해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 계량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중개·대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1호).
- 다. 소비자감시원이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 라.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 사항이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3조제4호 신설).
- 마.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 사항이 고시된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여 정정을 요구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2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에 대한 표시 및 제재체계 마련

개정안은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정 요구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개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14조의2),

정정 요구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사항 등) ①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 2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개선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벌칙)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5항, 제14조의2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 ----- 3. ~ 22.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14조¹⁾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의 상거래용 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해당 계량기가 비상거래용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정부는 최근 보도자료²⁾를 통해 기업현장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 선박·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보도자료 일부 발췌(국무조정실, 2024. 11. 21.)

④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사용 가능 (산업부)

[문제점] 요리, 취미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최대용량 1kg 초과 가정용 저울 판매** 시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주요 선진국은 가정용 저울에 대해서는 최대 용량에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면제하거나, 3kg 이하에 대해서만 면제

[개선] **최대용량 3kg 이하*의 가정용 저울은 형식승인 의무 면제**

* '23년 저울 생산량 중 3kg 이하 저울 비중은 약 73.7%(전체 29만대 중 22만대)

[효과] 기업부담 완화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

헌바 있으며, 이에 따라 비상거래용으로 제조·유통되어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저울이 실제 상거래 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 유통 확대 등으로 소비자가 형식승인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비상거래용 계량기의 오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개선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형식승인 면제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공백을 보완하고,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계량기의 상거래용 사용을 예방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형식승인 대상 여부

에 관한 정보 제공과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계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상거래용 계량기의 오사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전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규제 합리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 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형식승인 면제 확대에 앞서 필요한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 불법 계량기 유통 방지를 위한 조사·감시체계 강화

개정안은 불법 계량기의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조사 대상에 계량기 양도 관련자를 포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감시원의 직무에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비법정단위의 단속,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조사 등) ① ----- ----- ----- ----- ----- -----.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 <u>정량표시상품사업자</u> ,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1. ----- <u>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 계량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중개·대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자를 말한다)</u>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③ ~ ⑥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형식승인 및 검정여부 확인</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50조³⁾는 불법 계량기의 유통 방지 등을 위하여 제조업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⁴⁾는 소비자감시원의 직무로 비법정단위 사용 여부 확인,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3)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비법정단위의 단속,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2.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의 훼손·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질문
3.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4)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법정단위의 사용 여부 확인
2.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3.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4. 그 밖에 계량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구매대행 등 새로운 유통 형태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사 체계는 제조·사용 단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통 단계 관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소비자감시원의 직무에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법 계량기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개정안은 불법 계량기의 유통 방지 등을 위하여 조사 대상에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를 포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감시원의 직무에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 업무를 포함하려는 것임.

이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불법 계량기의 유통 경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감시원을 통한 시장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온라인 거래 및 구매대행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한 불법 계량기의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감시원의 역할 확대를 통해 행정인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등은 직접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와는 달리 유통을 중개·대행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자료 제출 요구의 범위 및 책임의 한계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소비자감시원의 직무 범위에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단순 외관 확인 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교육 등을 통한 감시원의 전문성 확보 및 구체적인 업무 범위 설정에 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최근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사·감시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으며, 불법 계량기의 유통 방지 및 시장 감시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57